

5. 진단 · 신고 기준

가.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

(1) 환자

- 뜨뜨가무시증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확인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

(2) 의사환자

- 추정환자: ①임상증상 및 ②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뜨뜨가무시증이 의심되며, ③추정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추정되는 사람

- ① **가피(eschar) 형성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며**, 발열·림프절 종대 등 뜨뜨가무시증에 부합한 임상증상이 동반되어야 함
- ② 잠복기 내 야외활동(텃밭작업, 등산 등)으로 진드기 노출력이 확인되어야 함
- ③ 추정진단 세부검사법(ICA, IFA 1차)에 의해 특이항체가 검출되어야 함
- ※ **뜨뜨가무시증이 의심되나(특이항체 검출 등), 가피 확인이 안되는 경우 관할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확인진단(PCR) 검사 권고**

□ **털진드기 유충에 물린 후 형성된 가피**



털진드기 유충에 물린 후 형성된 가피(자료원: 조선대학교병원)